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4. 21.  
북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4. 8.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6. 4. 15.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6. 4. 21.)

상정, 심사, 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가족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센터 행정사무를 명확히 하고 수강료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센터 관리·운영 위탁 근거의 명확화(안 제49조제5항)
- 수강료 명시 및 기준 신설(안 제53조제1항, 제2항, 별표 1, 별표 2)
- 현행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6조제1항제4항, 제54조제5호)
- 위원의 성별 구성 및 회피규정 의무화(안 제8조제1항, 제12조 제6항~제8항)

###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센터 행정 사무의 명확화와 수강료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9조제5항에서는 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시설로 센터 관리·운영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고

- 안 제53조제1항, 제2항, 별표1, 별표2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센터 프로그램별 수강료 명시 및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36조제1항제4항, 제54조제5호에서는 현행 상위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 안 제8조제1항, 제12조 제6항~제8항에서는 위원의 성별 구성 및 회피규정을 의무화 하였으며

- 안 제12조, 제20조, 제34조, 제55조, 별표3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음.

○ 종합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해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관 및 산하 각종 위원회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단서를 신설

하여 정책결정과정의 남녀평등 참여 시책에 부합하고, 그 밖의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성별영향평가법」

-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 3. 27.,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2. 마포구 양성평등위원회 현황

설치근거	설치일자	설치목적	임기	담당자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	2013.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2년 (1회연임)	김민경 (8923)

직위	성명	성별	위원위촉		위촉일	임기 만료일	비고
			당연직	위촉직			
위원장	오경희	여	○		-	-	
부위원장	김경숙	여	○		-	-	
위원	000	남		○	2024-08-22	2026-08-21	연임
위원	000	여		○	2025-03-11	2027-03-10	
위원	000	여		○	2025-03-11	2027-03-10	
위원	000	여		○	2025-03-11	2027-03-10	
위원	000	여		○	2025-03-11	2027-03-10	
위원	000	남		○	2025-03-11	2027-03-10	

### \* 연도별 개최 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회	2회	2회	3회	3회	4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6-46 관련
------------	-------------

제안년월일: 2026. 4. 21.

제 안 자: 복지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정책결정과정의 남녀평등 참여 시책에 부합하도록 함.

## 2. 수정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2조제2항)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